

대구지방법원 2020. 4. 8 선고 2019나316784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인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정길

피고, 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철

변론 종결 2020. 3. 25.

판결 선고 2020. 4. 8.

제 1 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. 8. 14. 선고 2019가단106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'2000. 8. 29.'을 '2000. 8. 30.'로 경정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C 대 681㎡에 관하여 2000. 8. 30.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(원고는 소장에 '2000. 8. 29.'로 기재하였으나, 원고가 '1980. 8. 30.'을 취득시효 기산일로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'2000. 8.30.'의 오기로 보인다)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.

2. 결론 및 직권경정

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.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,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'2000. 8. 29.'은 '2000. 8. 30.'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백정현, 판사 권형관, 판사 권비룡